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1** | 2026.5.11 (2026.5.4~2026.5.1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7~'31년)」 수립 착수회를 개최하고,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수출 품목의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품목에 중간재인 전기기기·비철금속과 소비재인 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을 추가해 20대로 확대하고, 현 산업 및 수출 구조를 고려해 주요 품목의 세부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계기비행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공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농해수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7~’31년)」 수립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 개정(산업통상부) ..... 8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0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 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 1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 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 20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 2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 21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 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 2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 23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 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 24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 24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 2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 25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방송통신(TMT)] 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 [공정거래]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임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제재 범위 확대 등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창간호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5. - 2026. 5. 5.)
- [지식재산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b>「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7~’31년)」 수립 착수</b><br>- ‘인공지능+융합(AI + Fusion)’을 통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조기 설계, 민간 주도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및 핵융합 특화 규제 체계 마련 등 본격 추진 | 2026-04-2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7~’31년)」 수립 착수회를 개최하고,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음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핵융합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추진 방향·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K-문샷 사업(프로젝트)’과 같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지난 20년간의 연구개발·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

최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초전도, 첨단 소재 등 혁신 기술을 핵융합 연구에 접목하면서 전력 생산 실증 시점을 2030~2040년대로 앞당기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 개발 전략 수립과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민간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상용화 경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가 1억도 플라스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하였고, 국내 기업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누적 해외 수주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핵융합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음. 다만, 최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 격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번 착수회를 통해 출범하는 기본계획 수립 기획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총 56명으로 구성되며,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① 실증 가속화, ② 생태계 혁신, ③ 기반 고도화,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 세부 실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① 실증 가속화 분야에서는 ‘K-문샷 사업(프로젝트)’과 연계하여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조기 설계,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2.0 고도화와 인공지능 가상핵융합로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이를 통해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증로 설계와 고성능 운전 각본(시나리오) 개발을 가속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② 생태계 혁신 분야에서는 핵융합을 ‘연구’ 영역에서 ‘산업’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국내 산학연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핵융합 혁신 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업 협력과 대규모 첨단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 세계 핵융합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③ 기반 고도화 분야에서는 핵융합 전력 실증을 뒷받침할 인력양성, 국제협력, 규제 체계 관련 사항을 다룸. 특히 실증로 설계·건설과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학제 기반의 핵융합 과학·공학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운영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제협력을 다변화하는 한편, 세계 규제환경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원자력 규제와 차별화된 핵융합 특화 규제 체계를 검토할 예정

과기정통부는 기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국가 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통상부

#### 「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 개정

- 15개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
-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 등 5개 신규 품목 추가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세부항목을 현 산업구조를 고려해 재편

2026-05-06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힘. 수출 품목의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품목에 중간재인 전기기기·비철금속과 소비재인 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을 추가해 20대로 확대하고, 현 산업 및 수출 구조를 고려해 주요 품목의 세부 항목을 조정했음

\* HS 코드(전세계 공통)를 우리 산업 구조에 맞게 산업통상부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

이번 개정은 '20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개편 작업으로 ①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②산업 및 수출 구조, 품목에 대한 설명력 등을 고려해 세부 품목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①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

-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을 주력 품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지속적으로 통계를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20대 주력 수출 품목의 '25년 수출 비중은 86.3%로 상승(기존 15대 77.2%), 전체 수출 통계와 동향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

② 산업 및 수출 구조, 품목에 대한 설명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의 세부품목을 조정

- 반도체는 집적회로라는 동일 코드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혼재했으나, 각각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
- 자동차는 차종과 파워트레인이 같은 레벨의 코드에 존재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차종을 상위 레벨4단위로, 파워트레인별을 하위 레벨6단위로 재편하고, 신차·중고차를 구분해 수출 동향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헬스는 별도 MTI 코드를 신설하고 세부항목을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분야별 수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철강재과 세부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철강재에 포함되어 있던 기타철강재, 원부자재 등을 기타 철강금속제품으로 이관
- 배터리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기타축전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코드를 신설하고, 다른 분류 항목에 흩어져있던 배터리 소재(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도 하나의 코드로 통합하여 신설
- 섬유는 섬유소재·제품임에도 타 분류항목에 혼재되어 있던 천연소재(기존 농수산식품), 가방·신발·벨트(기존 생활용품) 등을 이관해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
- 일반기계는 하위 분류(제조장비, 산업기계, 에너지기계, 기계부품)를 업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실제 산업별 분류와 일치시켜 통계 활용도를 제고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재정경제부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5-08 시행 |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5-11 시행 |
|-----------|-------------------|---------------|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
|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5-12 시행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범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6-05-12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2 시행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보험회사 간 약정으로 운영하던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적립율을 순보험료의 15퍼센트로 정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경우를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손해를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에 관한 표현을 일치시켜 집행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6-05-06 시행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1 시행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여객과 직접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받는 운임·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b>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 | 2026.05.06.<br>~2026.05.18.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①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 (안 제22조)
- ②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 마련 (안 제26조)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전화: 044-203-5124, 팩스: 044-203-4760)

|       |                         |                             |
|-------|-------------------------|-----------------------------|
| 국토교통부 | <b>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 | 2026.05.06.<br>~2026.06.15. |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공통업무(인력 수급, 교육·훈련,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및 평가, 통계 관리 등)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화: 044-210-4254, 팩스: 044-201-5628)

|       |                          |                             |
|-------|--------------------------|-----------------------------|
| 국토교통부 | <b>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 | 2026.05.07.<br>~2026.05.18. |
|-------|--------------------------|-----------------------------|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mailto:국토교통부_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5228)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5-06 발의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등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권의 강화 장치도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026-05-04 발의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2항·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5-0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77조의3)**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2026-05-06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6-05-06 발의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026-05-07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026-05-08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 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의 자금 유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6-05-06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2026-05-07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5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5-07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0인)

2026-05-07 발의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4)

|                                                                                                                                                                                                                                                                                                                                                                                                                                                                                      |                                                       |                      |
|--------------------------------------------------------------------------------------------------------------------------------------------------------------------------------------------------------------------------------------------------------------------------------------------------------------------------------------------------------------------------------------------------------------------------------------------------------------------------------------|-------------------------------------------------------|----------------------|
| <b>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b>                                                                                                                                                                                                                                                                                                                                                                                                                                                          |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b>                   | <b>2026-05-08 발의</b> |
| <p>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br/>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br/>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br/>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br/>지속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b>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br/>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b></p>                                                                                       |                                                       |                      |
| <b>행정안전위원회</b>                                                                                                                                                                                                                                                                                                                                                                                                                                                                       | <b>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김예지의원 등 13인)</b> | <b>2026-05-06 발의</b> |
| <p>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br/>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가스·위험물 등<br/>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br/>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p> <p>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br/>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b>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br/>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초기 대응에 기여하고자<br/>함 (안 제24조제2항)</b></p> |                                                       |                      |
| <b>행정안전위원회</b>                                                                                                                                                                                                                                                                                                                                                                                                                                                                       | <b>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br/>인)</b>             | <b>2026-05-07 발의</b> |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0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2026-05-06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2026-05-04 발의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5-04 발의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6-05-04 발의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 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사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05-06 발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6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2026-05-07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6-05-08 발의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 (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6-05-0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5-04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2026-05-06 발의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2026-05-06 발의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정무위  | 법안2소위          | 5/11(월) 14:00 | - 법안 심사                          |
|      | 법안1소위          | 5/12(화) 10: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5/14(목) 10:00 | - 법안 의결                          |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br>법안소위 | 5/12(화) 10:00 | - 농업협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5/12(화) 16:00 | - 법안 의결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5/11(월)<br>13:00 |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 박정현 의원실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5/11(월)<br>14:00 | 환경노조연대협의체 정책간담회                            | 김주영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간담회의실 |
|                 | 5/11(월)<br>18:00 | AI는 어떻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가                        | 김용태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간담회의실 |
|                 | 5/12(화)<br>14:00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 민병덕·박민규<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5/12(화)<br>14:00 |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 이주영 의원실          | 의원회관<br>8간담회의실 |
|                 | 5/13(수)<br>14:30 |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김우영·이해민<br>의원실   | 의원회관<br>6간담회의실 |
|                 | 5/14(목)<br>14:00 |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 제2차 국방 분야                  | 이주희·박선원<br>의원실   | 의원회관<br>7간담회의실 |
| 자료집<br>등        | 5/12(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9호(통권 제297호) 발간           | 국회도서관            |                |
|                 | 5/13(수)          | 「금주의 서평」 제2026-18호(통권 제777호) 발간            |                  |                |
|                 | 5/13(수)          | 「Data+」 제2026-7호(통권 제31호) 발간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5/6(수) | 「금주의 서평」 제2026-17호(통권 제776호) | 국회도서관   |    |
|          | 5/7(목) | 「NARS 브리프」 제158호             | 국회입법조사처 |    |
|          | 5/7(목) | 「이슈와 논점」 제2494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5/6(수) | 방송통신(TMT) | <a href="#">[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a> |
| 5/6(수) | 방송통신(TMT) | <a href="#">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a>                                             |
| 5/7(목) | 공정거래      | <a href="#">반복 담합 제재 강화: 임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제재 범위 확대 등</a>                               |
| 5/8(금) | 조세        | <a href="#">세종 미래상속 Insight 창간호</a>                                                 |
| 5/8(금) | 금융        | <a href="#">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5. - 2026. 5. 5.)</a>         |
| 5/8(금) | 지식재산권     | <a href="#">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a>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